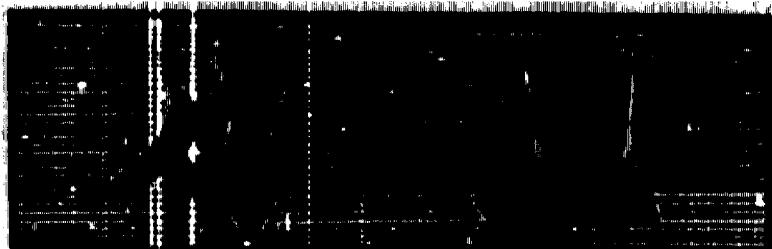


제 1342 호

1972. 8. 31

한국민족서예총판시장 상 편지  
한국민족서예총판장 편지 편지  
전화 75-7634  
한국민족서예총판시장 우편번호



한국민족서예총판시장 편지

### ○ 주 목

제 1342 호. 서울특별시 차세중 개정유적	3
제 1343 호. 서울특별시 원광진생사당소 차세중 개정유적	12
제 1344 호. 서울특별시 의화행전선봉부 차세중 개정유적	13
제 1345 호. 서울특별시 은주사당소 차세중 개정유적	13
제 1346 호. 서울특별시 사립회관 차세중 개정유적	14

1. 이 유적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2. 이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

서울특별시  
1127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확장 계획을 아래에 공표  
한다.

서울특별시장 양·박 시  
1972년 8월 30일

### ● 서울특별시지하철 1242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 2호선 확장 계획

서울특별시지하철 2호선 확장 계획은 기초 확장  
제2조회 2단계 2호선 확장과 함께 실  
현된다.

제2조회 2 (서울특별시지하철 2호선 확장 계획) ①시정발전  
에 관한 연구는 시장의 과제에 통하여  
기초 확장 계획 확장 계획을 한다.

②시정 개발방향은 일제 제1기 개발방향,  
제2기 개발방향, 제3기 개발방향, 제4기 개발방  
향과 제5기 개발방향을 두고 시정개발방  
향을 기초 확장 계획 확장 계획을 지향하  
는 자주간으로 표기된다.

다만, 제3기 개발방향은 기초 확장 계획  
제5기 개발방향은 기초 확장 계획으로 표기  
수 있다.

③시정 개발 방향 확장 계획은 확장 계획  
우선 확장 계획이다.

#### 1. 제1기 개발방향

- 가. 대시 체로화 운행에 관한 연구  
(기회, 대량, 소비, 신사, 영우 차이  
수입, 민원 충족, 기타)
- 나. 임상 철도망 확장 계획 수립에 관한  
제 1기 확장 계획

#### 2. 제2기 개발방향

- 가. 도시계획, 주택, 건축, 도로, 상·  
수도 기타 전설에 관한 연구

#### 3. 제3기 개발방향

- 가. 도시교통, 관광 및 운수시설에  
관한 연구

#### 4. 제4기 개발방향

- 가. 보건, 위생, 청소, 사회복지 및  
도시주택 대체에 관한 연구

#### 5. 제5기 개발방향

- 가. 도시미화, 공원, 하자 및 산업시  
설에 관한 연구

제2조회 3 (간사담당관) ①사하기관에  
관한 자체감사와 외부감사 수첩에 관한  
사무를 분장기 위하여 간사담당관  
을 두고 간사담당관은 제1부사장을  
보좌한다.

②간사담당관 일제 간사제 1명당, 1인  
제 2명당, 간사제 3명당과 간사제 4명당  
을 두고 간사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간  
사담당관은 지방 행정수장으로 보인다.

③간사담당관은 간사담당관은 운송수수는  
다음 자료와 같다.

#### 1. 간사제 1명당

- 가. 간사부설에 대한 통합계획
- 나. 운행간사, 간사원 간사는 외부감사  
의 예산 수립 준비 및 사무처리
- 다. 관광운수국, 수도국 소관사장에  
의한 간사, 미래조사 및 기관총무  
의회 정지 지정
- 라. 기비포조단체, 시민 투자기관, 기금  
과에 대한 간사

마. 단장판설에 차량용 계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 4조제 1항중 「행정 민주화」를 「기독 화민족」로 하고 제 2항 제 3호를 「마 을로」로 하여 한다.
2. 장사제 2단장	3. 기독화민족
가. 기독화민족, 비상재민족, 광보실, 제우국소관 사람에 대한 감자, 비워조사 및 비워공무원의 경계 체성	가.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운영 나. 광활화제작 및 유지관리 다. 시정현황 가고 말간 라. 도시개발 자료집 운영 마. 행정집행의 충합기록 및 유지관리 나. 기사제한 및 유통위원회 운영
나. 구청, 광무신고유원 소관 상장 에 대한 감자, 비워조사 및 비워 국무원의 경계체성·야립, 관찰 에 대한 운임금자는 행정과와 광보실로 정지한다.	제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사제 3단장	제 10조(광보실) ①광보실장은 각기관 으로 보한다.
가. 도시계획국, 보건사업국, 청소국, 집선국소관 사람에 대한 감자, 비워조사 및 비워공무원의 경계 체성	②광보실에 출보제, 보도제와 운화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합 다.
나. 할증전설사업소, 노동위원회사무국 소관 사람에 대한 감자, 비워조사 및 비워공무원의 경계 체성	③광보실의 재영물질자는 다음 각호 와 같다.
마. 특별감사, 단장감사	1. 광보제
바. 광수제 4단장	가. 운화광보행정의 충합체적
(1) 시장체인에 천법 사람	나. 광업상 신체에 관할 사람
(2) 부사경업 및 민원상자	가. 비공업자 광업기지지도
(3) 중요사업 주체 사업부 관할 사항	다. 각본심사 및 광업에 관한 사람
(4) 재무국, 산업국, 주택관리관 소관 사람에 대한 감자, 비워조사 및 비워공무원의 경계 체성	마. 광고영화제작
(5) 지하철전설본부, 소방소우, 광화 체포소 소관 사람에 대한 감자, 비워조사 및 비워공무원의 경계	마. 영화기사·영리
	사. 시민권익기사 및 사업소 관리
	아. 서울특별시묘 발간
	자. 시민회관, 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 악단, 어린이 활동관 운영
	● 차. 선내 차량 주차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람

## 2. 보 브 레

- 가. 사형죄로  
나. 예외신설과 바이오, TV방송등  
위해분석  
다. P.R총·사진영화 제작  
라. 유엔방송협회 운영지도  
마. 경비·사진설 운영  
바. 표본·서류 조사  
사. 순회·영화 활동

## 3. 출 퍼 대

- 가. 종교문화 보급·연구, 표본  
나. 예술축제·문화위원회 운영  
다. 종교문화제·발행지개발 대체  
마. 출판제·보증·유지관리  
바. 종교·밀·사찰에 관한 사람  
마. 종교·밀·문화예술단체와 기타  
사회단체의 자료·우편  
나. 민족당대·제보·밀·제작  
마. 출판수·밀·인쇄소·총독  
자. 부정기·'간행물' 출판  
자. 기타 문화·예술 전통에 관한  
사항

제11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우국에 충무파, 성경파, 인자파와  
사인파를 냄다.

제13호 '제2항 제1호를 「차」를  
「카」「트랙」「차」「풀」으로와 같이  
신설하여 제3호를 「위험전쟁선의  
구분 및 사후이양체육수대」로 하지  
다.  
다. 거리·경계·사업의 출발제역 및  
제작·운

## 제15호 「자제」

-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호(세정과) ①세정과가 세정자, 세원자, 차기자와 차묘처埋者를 두고  
지지제강은 차지기자로, 차나거는 차  
방법과 차관으로 보입니다.  
②세정자와 세정분장수는 차운·차묘  
자 같다.

## 1. 세 정 자

- 가. 축소관·태정의 축압조수  
나. 세정분양에 관한 기본제도수립  
다. 세정운영에 관한 세부개최의 총  
괄과·집행 및 정부설계에 관한 전  
사와 출판조장 및 통제  
마. 차량·세체와 차량세가·관금·법률  
·영령·수칙의 경우, 세정과의 일  
정지  
마. 차량 세법운영에 관한 조례의 집  
행 및 차량·세체와 관금·법률·영령·  
수칙  
마. 차량·세법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사. 구·세율개정과 같은 차원·차도  
·상수  
마. 차량·세체와 관금·법률·영령·  
수칙  
자. 차세수입·밀·세제수입과 같은  
·제고  
자. 남기·세고기·관금·세금  
마. 상수·밀·세제수입과 같은  
·관금·세금  
마. 차세·세법·세율·세금·제고·세금

1. 행정부와 민원 보는 척 속에 차 한 사무처리	나. 축량경사 (30㎜이상의 관리자 로운축량, 산자축량, 하강축량)
파. 과오남의 충당, 차후 및 교부금 사유	다. 지지 산정경사와 축량원인 경사및 사업
하. 정수관 방설사고의 원인과 재판 처분의 지도방법	라. 지적에 관한 경계 설정인 선정 마. 표지판에 기준조사 및 일대가격설정 에 관한 지도
제. 관세 사무의 국내 관세에 주는 영향 분석과 관세 사항	바. 지적도의 작성보안
2. 세원제	사. 지적판례 제출에 활용에 관한 지도
가. 세원제, 자동차세, 유류세·기세, 도· 속세, 아현세, 면허세, 세선세, 농지 세와 우자세에 대한 세율·개정의 지도방법	아. 관세책정
나. 세제에 대한 부과대상과 보고와 세제부과액의 실제	5. 자료처리제
파. 세제에 대한 세액조사와 사업 및 운용을 위한 경영실무에서 운영되 는 원칙 및 규칙 조정	가. 세우행정과 기계화 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하.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농축세 파세 사가 조준액·세율·세액·신설 마. 농지세 조작요건을 설정 및 차 별, 풍기, 푸, 일부 전망지·부착된 부록설비 관세고증액 기정	나. 부과징수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전자계산 조작의 관리 및 표지그림 다. 차기예이표 및 기본기표의 관리 라. 전자계산조작 이용 대상업무에 관한 개발연구
제. 세제에 대한 질의·고복과 제조 수입자·영구·소원·상원·국원·개승 사무처리	마. 전자계산조작고원 훈련에 관한 사항
자. 세제에 대한 사고의 행정자처리 파. 가족내장 및 차세대를 경비보증 지도방법	제20호제1항중 「세관관리법」은 「세관 총괄법」으로 하여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과 같이 한다.
3. 지적제	1. 세관총괄제
가. 지적관부의 정리 보관에 관한 지도방법	가. 세관총괄제도의 조사, 기회, 입안 등기보관 및 운송
	나. 세관체관의 충활과 조정수제
	다. 세관체관의 관리운용에 관한 제 도 강령
	라. 운송, 물류운재상의 세목사업 마. 학부세관의 사업(유상, 무상),





## 2. 관광사업체

가. 관광업체 종류 및 허가

나. 관광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3. 관광자료체

가. 관광자료체 조사통계 및 개발

나. 관광업체 자료, 감독

다. 관광현지 운영의 비밀감독

라. 관광업체 출입의 고장기록

제34조 제2항에 2호, 하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시장경찰체

가. 시장경찰체 허가(제조업소 제회)

나. 소비자 및 소비자의 행정과 차체

다. 시민 영향의 개선자료와 시생과 차회

라. 각종 시장경찰체 허설 및 험

마. 보건소 시장경찰체 허설(시  
장체소 제회)

## 3. 화장품체

가. 화장품제조업체 및 사용자조회소  
허가나. 화장품제조업체 및 사용자조회소  
판촉과 허설감찰

하. 이용자 이용자의 유통과 차회

라. 수입자 허설

마. 보건소 화장품제조업체 및 사용자  
제조업체 생활의 차회제35조 제2항에 1호를 "하자"로, "마"로  
그, "하자"를 "하자"로 하고 "마"를

하자로 같이 신설하여 각 2호로

"제35조 제2항에 1호를 "하자"로, "마"로  
그, "마"를 "하자"로 신설하는 바"로 한다.  
"하자"는 가증으로 주민을 차별하는제36조 제2항에 1호를 "제35조 제4  
항과 같다."로 한다.

## 1. 소비자체

가. 소비자체 허설 및 사용자조회  
소, 소비자 허설과 차회 및 주민  
생활 차회다. 일상생활에서 주민을 차별하는 행  
동, 일상생활에서 주민을 차별하는 행  
동, 일상생활에서 주민을 차별하는 행  
동(제35조 제4항)

라. 소비자체 허설 및 사용자조회

사, 소비자 허설 및 사용자조회

마, 소비자 허설 및 사용자조회  
체, 소비자 허설 및 사용자조회

## 2. 화장품체

가. 화장품제조업체 및 사용자조회소  
판촉과 허설감찰나, 화장품제조업체 및 사용자조회소  
판촉과 허설감찰

하, 이용자 이용자의 유통과 차회

마, 수입자 허설

제 42 호 제 1 호 중 「당장과」를 불법에 해, 속자자기를 「당장과와 속자자기」 로 한다.	마. 불자수를 및 사회의 조성 다. 풍물조류의 경사 조성 마. 물가의 조성 바속 마. 소비자 보호 자. 가격고시법 및 상표의 상장 아. 서울특별시 축종세계 개선위원회 운영 자. 주로 생활용 미용사업
제 43 호 (장점과) ①당장과와 당점과 속자자기 표호자와 세부지정은 주로 계 행한 다음 행정사무관으로 1972. 6. ②당점과와 세부운장자우는 ①과 같 다. 한다.	3. 제 1 항 제 가. 계약의 연구 및 조사 나. 세무기 첨사 및 징정 다. 이어밀 실시에 관한 사항 라. 세무기 사업 관리
4. 당·점·세 가. 육수민 대전의 유통조달 자. 세무기의 및 주로자·인점과 매설 자. 세무관에 사무법인 및 경비가 될 경우 자. 모체사장 운영 및 세금감독 자. 모체사장 개발세기 수입 및 증축 조성 자. 회계기준 운영 자. 상금회복금 지도·감독 자. 관세사무와 국내·국내·국·국 세세「수수자」 아니하는 사람 자. 모체자 모호성 자. 종자수조의 개선 자. 물가조사 및 물량통계	제 44 호 제 2 항 제 2 호, 알이제 「이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수출입을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 45 호 「세무」
	제 50 호 제 1 항 중 「판매제 1 차」를 「전 설 행정과」로 「판매제 2 차」를 「시설 판매과」로 하고 제 2 항 중 「판매제 1 차장과 판매제 2 차장」을 「전설 행정과 장과 시설판매과장」으로 한다.
	제 51 호 중 「판매제 1 차」를 「전설 행정 과」로 한다.
	제 5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762

411

(972-8-31, 14-14)

제 52 조(시정부령 제 100호) 시정부령 제 100호 시정부령 제 100호는 시정부령 제 100호를 주고 채택한 시장 행정사무처장으로 다음과 같다.	1) 시장·간접·사장 a. 주소주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로 100) 차장: 경기도 성남시
2) 시정부령 제 100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	a. 시장·간접·사장
1. 시장·간접·사장	a. 주소주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 시장·간접·사장	b.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q.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q.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r. 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4-12 6-276호

1972.8.31

서울특별시민감찰성사업소지체에 대하여  
제1호 이에 반대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대석

1972년 8월 30일

### ③ 서울특별시민감찰성사업소지체 제 1243호

서울특별시민감찰성사업소지체에 대하여  
제1호 이에 반대한다.

서울특별시민감찰성사업소지체에 대하여  
제2호 제1항은 "사업자에게 감독을" "지방  
시청기관"으로 "사업부기감을" "부지  
방지감부기감"으로 한다.

제3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 (지방청장) 사업소에 관리과와  
주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청기관  
으로, 감사과장은 지방도록 개별로 보  
단다.

제5호 (관리과) ① 관리과에 세무계와  
한미계를 두고 지장은 기관별로 사무관  
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세무·문서 사무는 다음  
작호와 분리.

#### 1. 세무계

- 가. 문서·회계 및 기밀
- 나. 인사·봉급·급여 및 부수
- 다. 비품 관리
- 라. 5·16 통장 관리
- 마. 출자금·운영 및 베풀
- 바. 예산 및 회계
- 라. 회계 여부와 다각적·구체적·  
제한적·이해하는 사업

#### 2. 관리과

- 가. 공사 지구에 풍차 배수 및 보상
- 나. 각종 풍차의 발주
- 다. 각종 공사를 관리자에게 구매자 충당
- 라. 풍차를 관리 관리
- 마. 관할 구역의 토사 대작

제6호 (공사과) ① 공사과에 제1계와 공  
사제 1계와 공사제 2계를 두고 지장은  
지방도록 개별로 보한다.

② 공사과의 제1계 관찰 사무는 다음  
작호와 같다.

#### 1. 제1계 계

- 가. 관찰의 풍차개방지 관리 보지이용
- 지침

- 나. 개발을 위한 조사측량
- 다. 각종 보통 공사계획 설계
- 라. 풍차 검사
- 마. 관리 태세 주변에 수사기 아니  
하는 사항

#### 2. 공사제 1계와 공사제 2계

- 가. 지구내 풍차 관찰감수
- 나. 지구내 토지정비 이용감수
- 다. 지구내 조로·교량·차수지 설계  
유지 관리 등

제7호 (지구의기정) 청조회 규정에 의한  
관사제 1계와 공사제 2계의 문장 사무는  
지구에 있는 풍차별로 문장화되며 지구  
의 지정은 소장이 이를 행인다.

제8호 (지구내원) 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  
과장이 그 직무를 대임한다.

제 9 호를 수령한다.

부         부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자치행정청은부지제통     제 9 호  
칙을 이에 종료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재

1972년 8월 30일

### ⑨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44 호.

서울특별시자치행정청  
본부지제통지성용칙

서울특별시자치행정청은부지제통     제 9 호  
판이 개정된다.

제 5 조 제 1 항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제 9 호

제 2 항 제 2 호를 제외하고 제 1 항

그 시행일은 하계하반 제 2 항 제 3 호를  
마감과 같이 시행된다.

#### 3. 운영체

가. 자치행정법 제 17 호에 따른

나. 자치행정법 제 20 호에 따른

다. 자치행정법 제 21 호에 따른  
경비,

라. 자치행정법 제 22 호에 따른

마. 자치행정법 제 23 호에 따른

부         부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특별시자치행정청은부지제통     제 9 호  
판이 개정된다.

서울특별시자치행정청은부지제통     제 9 호  
판이 개정된다.

### ⑩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45 호.

서울특별시자치행정청은부지제통     제 9 호  
판이 개정된다.

